

## 금품·음식물 등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

### ◎ 기부행위란?

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에 대하여 금전·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,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
### ◎ 용어설명

“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” 에는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되며,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의 경우 그 참여자 전원이 선거구민일 필요는 없습니다.

“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” 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·친지·친구·직장동료·상하급자나 향우회·동창회·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·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.

### ◎ 기부행위제한기간 ▶ 상시 : 언제든지

### ◎ 주체별 기부행위 제한 내용

주체별	제한기간	제한내용
국회의원·지방의원·지방자치단체장·정당의 대표자·후보자(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. 이하 이 표에서 같음)와 그 배우자	상시	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에 대한 기부행위(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포함) 금지
정당(당원협의회와 창당준비위원회 포함),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,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가족, 선거사무관계자,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	선거기간 전	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금지 ※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,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봄
	선거기간 중	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
제3자(누구든지)	상시	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

### ◎ 처벌 및 포상금

- ▶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, 향응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**최고 3천만원 한도에서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**가 부과됩니다.
- ▶ 기부를 지시·권유·알선·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(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자 제외)는 **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**에 처해집니다.
- ▶ 기부행위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**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**을 드립니다.